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이란 산학협력단 각종사업 및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 단,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연구원 직급 및 소속)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원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절차 및 임용서류) 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임용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임용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1.>

1. 임용신청서(별표2)
2. 임용지원서(별지서식1, 2)
3. 학위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연구과제별 인건비편성표(별지서식3)
7. 개인정보수집·이용·3자제공동의서(별표5)
8. 급여수령계좌사본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5조 (임용기간) ①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 및 과제기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연구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한다.

제7조 (급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임용 신청 시 인건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월지급액은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본교의 인건비 지급기준(별표1)을 적용한다.

제8조 (계약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임용 변경 신청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1.>

1. 참여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경
2. 임용기간의 변경
3. 인건비 자원 과제 변경
4. 기타 변경

제9조 (면직) ① 연구원의 면직은 면직 1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면직 신청서(별표4)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1.>

-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요청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면직된다.
- ③ 사업의 중단 또는 연구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① 연구원의 임용 시 인건비 자원에 퇴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③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월 퇴직적립금을 중도퇴직정산하여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한다.

제11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연구원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05.01., 2018.08.10.>

연구원 인건비 산정 기준

(단위: 천원)

임용 구분	임용 권자 (고용 자)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기준	월 기준 인건비 (참여율 100% 기준)		12개월 기준 인건비 (기관 부담금, 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퇴직금 미포함	기관 부담금, 퇴직금 포함	
전임 연구 교원	총장	박사급 1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4,500	5,321	63,852
		박사급 2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5,500	6,504	78,048
		박사급 3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	6,500	7,686	92,232
		박사급 별호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한 본교 전임교원 교수급 경력 인정자	8,000	9,459	113,508
전임 연구 원	산학 협력 단장	전문학사급	전문학사 취득자	1,800	2,129	25,548
		학사급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경력 인정자	2,500	2,957	35,484
		석사급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3,500	4,139	49,668
		박사급 1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4,500	5,321	63,852
		박사급 2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5,500	6,504	78,048
행정 연구 원	산학 협력 단장	1호	전문학사 취득자	1,800	2,129	25,548
		2호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1,900	2,248	26,976
		3호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경력 인정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2,000	2,365	28,380
		4호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2,100	2,483	29,796
		5호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2,300	2,720	32,640

임용 구분	임용 권자 (고용 자)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기준	월 기준 인건비 (참여율 100% 기준)		12개월 기준 인건비 (기관 부담금, 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퇴직금 미포함	기관 부담금, 퇴직금 포함	
행정 연구 원	산학 협력 단장	6호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2,500	2,957	35,484
		7호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2,700	3,193	38,316
		8호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3,000	3,547	42,564
		9호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	3,300	3,902	46,824
		10 호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후 2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의 경력자	3,600	4,257	51,084

1) 3개월 이상 임용하여야 하며, 월 기준인건비는 인건비 계상과 참여율 관리의 상한액임

2) 월 지급액 = 월 급여 +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월 퇴직적립금

① 월 급여 = 월 기준 인건비×참여율(%)

※ 월 급여(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미포함)는 아래 기준 이상 책정하여야 함.

- 2018년도: 월 60만원 이상

- 2019년도: 월 66만원 이상

②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예상액) = 월 급여×9.9%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해야 함

③ 월 퇴직적립금 = 월 급여 ÷ 12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퇴직금 = 월 퇴직적립금 × 임용기간(월)

3) 전임연구교원 직명은 '전임연구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사업목적 및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교수, HK연구교수, 계약교수, 박사급 연구원, 석박사후 과정생 등 직명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경력환산 기준

① 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하며, 부족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

②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함.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소지자, 특수한 경력자는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월 기준액을 계상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6)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기준액을 상향 계상 가능함.

[별표 2] <개정 2018.05.01.>

연구원 임용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학력	학위명		취득일		취득기관	
	학사					
	석사					
	박사					
경력	기간			부서		직위
	. . . ~ . . .					
	. . . ~ . . .					
	. . . ~ . . .					

2. 참여과제(사업)명

구분	지원기관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인건비 예산 (단위: 천원)	비고
과제1	한국연구재단	A2018-0001	홍길동	18.09.01~19.08.31.	24,834	
과제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A2018-0002	김길동	18.09.01~19.08.31	24,834	

3. 임용요청내역

요청내역	임용 구분	직급 구분	임용기간 (3개월 이상)	주당 근무 시간	과제 번호	총 참여 율	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인건비 예산 총액
							월 급여	4대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 신규임용 ☐ 재임용	전임 연구 원	석사 급	2018.09.01 ~ 2019.08.31 (12개월)	2018년도 40시간, 2019년도 40시간	A2018-0001	50%	3,500	347	292	4,139	49,668
					A2018-0002	50%					

※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월급여의 9.9%(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를 책정하며,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하여야 함.

※ [별지서식3. 연구과제별 인건비편성표.exl]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위와 같이 인건비 예산 및 참여율에 따라 연구원 임용을 신청합니다.

20 21 22 23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3] <개정 2018.05.01.>

연구원 임용 변경 신청서

1. 임용변경 대상자 :

2. 변경항목

☐ 참여율(인건비) ☐ 임용기간

<변경 전>

임용 구분	직급 구분	임용기간	과제 번호	참여율	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인건비 총액
					월급여	4대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전임 연구원	석사급	2018.03.01 ~ 2019.02.28 (12개월)	A2017-1111	40%	1,400	139	117	1,656	19,872

<변경 후>

변경 일자	임용 구분	직급 구분	임용기간	주당 근무시간	과제 번호	참여율	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인건비 총액
							월 급여	4대 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2018. 09.01	전임 연구원	석사급	2018.03.01 ~ 2018.08.31 (6개월)	35시간	A2017-1111	40%	1,400	139	117	1,656	9,936
			2018.09.01 ~ 2019.02.28 (6개월)	2018년도 40시간, 2019년도 39시간	A2017-1111	40%	1,400	139	117	1,656	9,936
					A2017-2222	10%	350	35	30	415	2,490

위와 같이 연구원 임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4] <개정 2018.05.01.>

연구원 면직 신청서

1. 면직대상자

이름 (개인번호)	생년월일	임용기간	면직일자	면직사유
홍길동 (IACF0000)	1985.02.10.			

2.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지급처(계좌)	비고
0	-	-

붙임 : 사직서 1부

위와 같이 연구원 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입니다.

3.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1금융권, 성북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나. 개인정보 3자 제공 목적: 연구원 인건비 지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제1금융권: 성명, 계좌번호
- 2) 성북세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총액, 결정세액(소득세법 제164조)
- 3)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법 제10조, 동법 제77조)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하신 경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연구원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을 동의합니다.

20 21 22 23

성명: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